※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0. 4. 13.>

■食品衛生法施行規則 [別紙第42号書式] ＜改正2020年4月13日＞

영업의 폐업신고서
営業の廃業届出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신고인 届出人	성명 氏名	생년월일 生年月日
	주소 住所	
영업소 営業所	종류 種類	업소명 営業所名
	소재지 所在地	

폐업일 廃業日	년 월 일 年 月 日

영 업 허 가 증 · 영 업 신 고 증 · 영 업 등 록 증 분 실 사 유
営 業 許 可 証 · 営 業 届 出 証 · 営 業 登 録 証 の 紛 失 事 由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食品衛生法」第37条第3項から第5項までの規定及び同法施行規則第44条に基づき、営業を廃業するために上記の通り申告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申告人 (署名又は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地方食品医薬品安全庁長 殿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長·郡守·区庁長

첨부서류 添付書類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営業許可証、営業届出証又は営業登録証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営業許可証、営業届出証又は営業登録証を紛失した場合は紛失事由を記入し、営業許可証、営業届出証又は営業登録証を添付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	수수료 없 음 手数料なし

참고사항
参考事項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付加価値税法」第8条第7項による廃業届出をするために、同法施行規則別紙第9号書式の廃業届出書を一緒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場合、地方食品医薬品安全庁長、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は一緒に提出された廃業届出書を管轄の税務署長に送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처리 절차
処理の流れ

신고서 작성 届出書の作成	→	접수(세무서로 송부) 受付（税務署へ送付）	→	검토 検討	→	결재 決裁	→	통보 通知
신고인 届出人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処理機関：地方食品医薬品安全庁、特別自治市・特別自治道・市・郡・区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